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 월 29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인

여수시 조례 제2013호

붙임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013호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회의 질서 유지 의무, 그 밖의 위반 행위

제31조제5항 중 "제출받아"를 **"제출받아 별표 1을 준용 하여"**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윤리심사 및 징계)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제10조(윤리심사 및 징계)** ①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의원이 여수시와 계약체결 [본항 개정 2022. 1. 13.]	5. 의원이 여수시와 계약체결 [본항 개정 2022. 1. 13.]
<신 설>	6.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회의 질서유지 의무, 그 밖의 위반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 ---------- ---------- ------- 제출받아 별표 1을 준용 하여 ----------.

현 행

〔별표1〕

징계기준(제10조 및 제31조 관련)

구 분	비위 유형	적용 기준
겸직신고 위반	○ 불성실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영리거래 금지 위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불성실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영리거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경고, 공개사과
	○ 가족 채용 제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경고, 공개사과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경고, 공개사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위반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경고, 공개사과
	○ 알선·청탁 등의 금지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정보이용 거래 제한	경고, 공개사과
	○ 공용재산 사적 사용·수익 금지	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경고, 공개사과
	○ 직무권한 행사 부당행위 금지	경고, 공개사과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 위반	○ 국내외 활동 제한	경고, 공개사과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 통지 제한	경고, 공개사과
	○ 성희롱 금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개 정 안

〔별표1〕

징계기준(제10조 및 제31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공개사과
	○ 업무추진비 등	
7.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	○ 회의장 질서문란 언동, 의장(위원장)의 조치 요구 불응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회의 중 소란행위로 발언 방해, 허가없이 연단·단상 등단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지방자치법·회의규칙 등을 위반하여 회의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 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8.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현 행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4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 정 안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4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

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